

전자어음제도의 도입과 법리적 과제

권종호(건국대 법대 교수)

I. 서론

1. 전자어음제도의 의의

IT기술의 발전을 배경으로 주식, 사채 등 투자증권을 중심으로 유가증권의 전자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¹⁾ 최근에는 어음·수표에 관해서도 전자화의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지난 2001년 11월 29일 여야국회의원 145명이 실물약속어음을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안”(이하 “전자어음법안”으로 인용)을 발의하였고, 현재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심사중에 있다. 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어음은 실물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전자장부상의 기재(electronic record)만으로 어음의 발행, 양도, 담보설정, 상환 등 어음에 관련된 제반권리행사가 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이 어음의 발행·이전·권리행사 및 소멸의 전 단계가 오로지 전자적인 등록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흔히 “전자어음제도”라고 하는데, 이 전자어음제도는 지면형태의 어음실물이 발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른바 “어음의 무권화”(dematerialization)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이 “어음의 무권화”는 크게 보면 이미 국제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유가증권의 전자화”의 한 현상이기는 하지만, 전자화의 발전단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제외국에 비해 상당히 선진화된 것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찍부터 어음제도에 전자적 시스템을 도입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실물어음의 발행을 전제로 한 이른바 “어음의 부동화”(immobilization)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1) 상세는 정승화, “전자투자증권의 법적 과제” 「전자금융의 법적 과제(1) - 전자유가증권을 중심으로 -」 (한국법제연구원, 2002) 79면.

어음의 무권화, 즉 전자어음제도의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①실물어음의 발행 및 관리에 따르는 시간적 경제적 제반비용의 절감 ②어음유통과정의 전자화로 인한 자금이동 및 출자관계의 투명성제고 ③어음실물의 부존재로 인한 화재·도난 등의 어음사고로부터 안전 ④어음거래의 실명화와 이로 인한 음성적 거래차단을 통한 건전한 금융시장육성 ⑤지역적 시간적 무제약에 따른 어음결제의 신속화와 그로 인한 고객에 대한 편리성제고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유가증권의 무권화가 Global Standard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주요국보다 한발 앞서 전자어음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인터넷보급을 세계1위 국가로서 그 위상제고 및 국가경쟁력강화에도 상당히 기여하리라 생각된다.

2. 외국의 동향

어음제도의 전자화는 국제적인 추세이지만 그 내용은 전술한 바와 같이 ‘실물어음의 부동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영어로는 Check Truncation, 독일어로는 beleglose Scheckinzugsverfahren 라고 하는 “전자결제시스템”(Electronic Payment System: EPS)이 그것인데,²⁾ 이 방법은 실물어음의 발행을 전제로 하고 다만 실물어음은 거래은행(추심위임은행) 또는 어음보관장소에 보관해 둔 채 어음에 관한 정보(즉 발행인의 계좌번호나 어음금액 등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 방법을 통해 지급은행에 전송하여 자동적으로 발행인의 계좌로부터 자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다. 발행인의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지급은행이 지급거절을 한 경우에는 지급은행에 의한 지급거절선언에 갈음하여 거래은행이 지급거절의 취지를 어음에 기재한 후 그 어음을 추심의뢰인(실물어음의 원소지인)에게 반환하게 된다.

이 전자지급시스템은 지급결제수단으로서 수표가 널리 사용되고 그 사용규모 역시 막대한 미국을 비롯한 유럽제국을 중심으로 지급결제업무(수표교환)의 합리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일찍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다.

2) 물론 외국의 경우에는 어음보다는 수표의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시스템의 전자화는 주로 수표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

(1) 미국과 영국

먼저 미국의 경우 수표의 사용이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국가답게 수표사용 규모의 증가와 함께 수표의 추심비용이 은행경영상 큰 문제로 부각되면서 상당히 일찍부터 전자지급시스템의 도입이 시도되었는데, 1990년 통일상법전(UCC)의 제3편 및 제4편의 개정³⁾에 의해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수표를 교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³⁾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지급이 완료된 실물수표를 영수증으로 활용하는 관습으로 인하여 전자결제시스템(check truncation)의 이용은 활발한 편은 아니다. 최근에는 통일전자거래법(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 Act: UETA)⁴⁾과 연방전자서명법(E-Sign Act)⁵⁾이 2000년에 각각 제정됨으로써 종래의 부동화에서 한단계 진일보한 무권화로의 이행을 가능케 하는 법적인프라가 구축되었으며, 실제로 전자수표(electronic checks)제도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⁶⁾ 이 전자수표는 실물수표의 발행없이 오로지 전자적 방법으로 수표의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국가는 전세계적으로 미국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⁷⁾

영국의 경우에는 1980년대부터 컴퓨터상에서 MICR(Magnetic Ink Character Recognition · 磁氣印字)을 이용한 방법으로 수표에 대한 결제의 자

3) 즉 당사자간에 전자적 제시에 관한 합의(agreement for electronic presentation)가 있으면 어음·수표 등의 증권(item)을 현실적으로 제시하는 것에 갈음하여 그 영상(image)의 전달 또는 어음수표에 관해 기록된 정보(data)의 전달을 통해 지급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UCC§4-110), 이 때 지급은행은 지급후 어음수표의 실물을 고객(발행인)에게 반환하는 것에 갈음하여 해당어음수표에 관한 기록이 있는 “계좌계산서의 정보”를 제공하면 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UCC§4-406(a)).

4) 이에 관한 상세는 정경영, “미국통일전자거래법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제19권 2호(2000) 253면이하 참조.

5) 정식명칭은 Electronic Signatures in Gr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 이다.

6) see Ronald J. Mamm & Jane Kaufman Winn, E-Commerce(Winter 2002 Draft), at 540-553, 546.

7) 임채호, “전자수표시스템”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2001. 6) 61면.

동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이 방법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논란이 많았고, 그 결과 영국은 다른 유럽국가 예컨대 이미 1970년대부터 90%이상의 수표를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결제하고 있던 벨기에나 덴마크, 스웨덴에 비해 그 이용이 극히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전자결제시스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1996년에 유통증권법(Bills of Exchange)을 개정⁸⁾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수표를 교환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2) 독일과 프랑스

독일의 경우는 일찍이 1985년부터 독일연방은행의 주도하에 전금융기관간에 맺은 “무증서수표추심절차에 관한 협정”(Abkommen über das beleglose Scheckinzugsverfahren: BSE-Abkommen)에 기하여 일정액이하(최초에는 1000마르크이었으나 1993년에 5000마르크로 인상됨)의 수표의 경우는 반드시 전자적인 방법에 의해서만 교환(추심)이 가능하도록 하였다(고액수표는 현물 교환).⁹⁾ 그후 이 BSE협정은 1998년에 “수표추심에 관한 협정”(Abkommen über den Einzug von Schecks: Scheckabkommen)으로 통합되었으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수표교환에 관해서는 동협정 제2장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명칭은 BSE-Verfahren¹⁰⁾이다.

프랑스의 경우는 수표뿐만 아니라 어음의 경우도 일찍부터 전자적인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져 왔다. 수표의 경우는 은행간의 합의에 기해 사용하는 “磁氣수표”(image-chèque)라고 하는 것이 그것인데, 수표실물은 발행하지만

8) 이 개정은 Deregulation (Bills of Exchange) Order 1996, SI 1996 No 2993에 의해 1882년유통증권법에 §74A, §74B, §74C를 추가하고 1957년수표법 제3조를 개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9) 독일의 경우는 이와 같이 전자결제시스템을 미국이나 영국처럼 입법을 통해 운영하지 않고 각종금융기관의 업계단체의 협정에 기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그 결과 이 협정은 고객과의 관계에서는 법적인 효력은 없고 단지 금융기관간에만 효력을 가지며, 따라서 약관은 아니다.

10) 정식명칭은 Bestimmungen über den beleglosen Einzug von Scheckgegenwerten ohne Vorlage der Originalschecks(실물수표의 제시가 없는 “전자정보에 의한 수표추심”에 관한 규정)이다.

그 수표에 관한 정보를 磁氣化해서 그 전자화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결제를 하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어음의 경우는 수표보다도 먼저 전자화되었는데, 여기에는 환어음에 관한 것(Lettre de Change-Relevé: LCR)과 약속어음에 관한 것(BOR)이 있으며 특히 LCR의 경우에는 ①어음실물이 발행되는 경우와 ②발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①은 어음의 “부동화”라고 한다면 ②는 무권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스템은 아주 특이한데, 지급은행이 발행인에게 서면 계산서(relevé écrit)를 발송하여 지급의사를 타진하고 이 때 지급지시가 있으면 (지급지시가 없으면 물론 지급은행은 지급해서는 아니됨) 발행인의 계좌로부터 자동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¹¹⁾

(3) 일본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어음 및 수표를 대상으로 2006년 8월에 실시할 예정으로 현재 한창 준비중에 있다.¹²⁾ 그런데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시스템은 우리 나라와는 달리 영미나 유럽에서 보편화된 전술의 “전자교환방식”이다. 따라서 일본시스템 하에서는 어음수표의 실물은 여전히 발행되게 되며 다만 어음교환업무가 전자화됨으로써 어음수표의 실물교환이 생략될 뿐이다. 일본의 전자결제시스템의 도입에는 전자어음교환소의 개념이 핵심을 이루고 있는데, 전국에 걸쳐 540여개에 이르는 어음교환소(법무대신지정교환소가 173개, 미지정교환소가 372개)를 하나의 전자어음교환소로 통합한다는 구상이다. 즉 어음교환소의 난립과 이른바 “입회교환방식”의 어음교환의 후진성을 전자어음교환소를 통해 일거에 해결하려는 것으로서, 이 전자어음교환소가 제시은행(고객으로부터 추심을 위임받은 은행)으로부터 어음수표에 관한 전자화된 정보를 수령하여 이것을 지급은행에 전송하는 역할과 함께 차액결제 및 어음수표에 관한 정보의 관리·보관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어음교환사무의 합리화를 도모하

11) 岩原神作, “チェック・トランケーションにおける法律上の問題” 「金融法研究・資料編(16)」 14면.

12) 일본의 경우는 어음 및 수표 이외에도 현재 어음교환소에서 취급하고 있는 증권(예컨대 利札이나 주식배당영수증 등)도 그 대상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다(全國銀行協會, “チェック・トランケーション導入に関する基本方針について” 「金融」 (2002. 4) 2면.

는 동시에 어음수표의 실물교환에 따르는 비용과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음·수표의 전자화는 이미 역행할 수 없는 국제적인 추세이다. 다만 그 실물증권의 부동화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증권화, 즉 전자어음제도와는 다를 뿐이다. 그러나 법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증권화의 부동화와 무권화는 실물증권이 발행되느냐 않느냐의 차이이며 양자간에는 증권발행과 보관에 관련된 문제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차이는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로 전자어음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도입시 예상되는 법리상의 문제에 관하여 현재 심의중인 전자어음법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본고의 목적상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른바 어음제도폐지론과 어음제도대체결제수단에 관해 간단히 검토하기로 한다.

II. 어음제도폐지론과 어음대체결제수단

1. 어음제도폐지론

우리나라에서 어음제도폐지론이 등장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1997년 IMF 경제위기의 과정에서 어음부도의 급증과 함께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이 사회문제화되면서부터이다. 어음, 특히 약속어음이 중소기업의 금융부담과 자금난을 가중시키며¹³⁾, 연쇄부도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금융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인식되면서 어음제도폐지론이 확산되게 되고, 결국에는 약속어음제

13) “어음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킨다”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어음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제규모를 확대한다는 유력한 반론이 있다. 즉 만일 어음제도를 폐지한다면 대기업은 중소기업으로부터 납품을 받고 그 대금을 외상채무로 남겨두게 될 터인데, 이렇게 되면 납품대금채권이 동결되는 결과가 되어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오히려 심화될 것이고, 또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기업에 현금결제를 강제하게 되면 이 때에는 대기업으로서는 현금동원가능범위에서만 구매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제규모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이철송, “전자어음 시장론”(2003) 3면).

도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어음법중개정법률안”(이하 “어음법개정안”으로 인용)이 1998년 5월 8일 여야의원 41에 의해 국회에 발의되게 된다.

이 법률안은 2001년 7월 31일을 기점으로 약속어음제도를 폐지하되, 그 전까지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기업간의 자금유통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한다는 의미에서 어음의 만기를 60일로 하고, 선일자어음의 발행을 제한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무부를 비롯한 재경부, 한국은행 등 유관부처와 업계 및 학자의 다수가 반대를 함으로써 결국은 폐기되었다.

기업연쇄부도문제는 어음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업의 만성적인 자금부족, 하도급구조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한 어음제도의 남용(현금지급의 회피 및 대금지급의 지연수단으로 어음이용) 등 기업환경 및 경제구조적인 요인에 의한 면이 크며, 개정안대로 어음제도를 인위적으로 폐지할 경우에는 오히려 ①기업간 신용의 상당부분이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수요로 전환되어 심각한 신용경색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②현금결제비중의 확대가 곤란한 현실에서 채권회수의 불확실성의 증가로 상거래를 급격히 위축시킬 수 있으며, 그리고 ③약속어음에 갈음하여 선일자수표나 자기앞환어음을 발행하는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기업간 신용거래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그 이유이었다.¹⁴⁾

2. 어음대체결제수단

(1) 현금성결제제도

어음폐지론은 이렇게 하여 일과성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한편으로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의 활용을 촉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

즉, 어음제도의 부정적인 기능의 부각으로 인하여 촉발된 어음제도폐지에 관한 논의를 계기로 어음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¹⁵⁾ 어음의 이용을 줄여

14) 法制司法委員會, “어음法中改正法律案檢討報告”(1998. 12).

15) “부작용최소화”방안으로 제안된 것에는 ①하도급거래관행의 개선 ②어음보험제도의 개선 ③어음부도에 대한 신용정보관리강화 ④어음발행에 대한 금

나가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검토되게 되는데, ①기업구매자금대출¹⁶⁾ ②기업구매전용카드¹⁷⁾ ③전자외상매출채권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현금성결제제도가 바로 어음결제축소의 방안으로 제시된 것들이다. 이러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을 도입·활성화함으로써 기존의 어음에 의한 외상거래를 대출에 의한 현금결제로 대체하고 이를 통해 어음결제의 비중을 줄이겠다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한국은행자료에 의하면 현금성결제제도가 기업결제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까지 그 수치에 있어서는 미미하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⁸⁾

현금성결제제도 중 특히 “전자외상매출채권”은 기업간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채권을 전자화한 것으로서, 외상매출채권을 구매기업이 자신의 거래은행(발행은행)의 전산망을 통해 중앙관리기관(금융결제원)의 장부(전자채권원장)에 등록시키는 방법으로 전자식 채권으로 변경하여 판매기업에 발행하면,

유통기관의 Monitoring강화가 있으며, 법제화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어음발행부담금제와 어음발행한도제의 도입제안도 이 범주에 속한다(서헌제, “어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제20권 제3호(2001) 169면이하 참조).

16)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는 납품기업(공급자)이 구매기업로부터 어음을 수취하여 할인·현금화하는 이른바 “공급자금융방식”인 어음과는 달리, 구매기업(구매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융자받아 납품대금을 현금결제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매자금융제도”의 한 형태이다. 즉 납품업자가 구매기업을 지급인, 본인을 수취인으로 하고 납품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를 하면, 구매기업은 자신의 거래은행으로부터 결제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아 지급하는 제도이다. 물론 구매기업에 대한 대출한도는 당좌개설시에 정한 약정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환어음은 추심수단으로만 활용케하고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연쇄부도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서헌제, “전계논문” 186면, 재정경제부, “어음제도 개선방안”(2000. 2. 17) 및 본문 II. 2. (2) 참조).

17) 기업구매전용카드란 기업이 물품구매에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하는데, 납품대금에 관해 구매기업이 카드로 결제하면 납품기업은 납품기업은 카드사(구매기업의 지급대행은행)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결제시스템이다.

18) 현금성결제제도에 의해 이루어진 결제금액은 2001년에는 약63조원으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합친 결제금액의 1.8%수준이었으나, 2002년도의 경우에는 결제금액은 약130조원으로 늘고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합친 결제금액에 대한 비율도 3.4%수준으로 향상되었다.

판매기업은 동채권을 자신의 거래은행(보관은행)을 통해 만기에 추심하거나 혹은 만기전이라도 동채권을 보관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현금화하는 제도이다.¹⁹⁾ 그리고 전자외상매출채권은 담보대출목적으로 보관은행에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가 금지된다는 점에 특징이 있는데, 이는 유통으로 인한 연쇄부도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 전자외상매출채권은 ①채권의 존재가 紙面의 형태가 아니라 전자적인 형태로만 인식된다는 의미(즉, 종이의 발행이 없다는 점)에서 무권화(無券化)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점과 ②기업간상거래의 지급결제수단이라는 점에서 전자어음제도와 유사하다. 더욱이 현행의 전자외상매출채권은 어음과 달리 양도 유통이 불가능함으로써 어음제도의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 연쇄부도의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²⁰⁾ 어음제도의 문제점까지 보완한 결제시스템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2) 전자외상매출채권과 어음과의 관계

그리하여 전자외상매출채권에 대해 어음의 신용공여기능과 수표의 지급기능의 장점을 혼합한 금융·결제수단이라 하여²¹⁾ 어음의 기능을 대체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²²⁾ 그러나 전자외상매출채권과 어음에 대해 이처럼 배타적인 관계로 보는 시각은 다음의 점에서 과장된 것이며, 오히려 역할과 기능이 있어서 서로 상호보완적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첫째, 전자외상매출채권은 양도가 허용되지 않음으로써 어음의 폐해인 연쇄부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제도이고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어음제도를 대체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연쇄부도의 개념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전제로 한 주장으로서 올바른 것은 아니다.

즉 연쇄부도의 의미에 관해 일반적인 인식은 “어음이 부도나게 되면 그 어음에 배서한 자는 연쇄적으로 부도를 내고 도산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19) 상세는 손희성, “B2B에 있어서 기업간전자외상매출채권의 현황과 과제” 「전자금융의 법적 과제(1)」 (한국법제연구원, 2002) 39면.

20) 손기성, 전제논문, 46면.

21) 한국전자거래진흥원, 「B2B전자결제 워킹그룹 - 전자외상매출채권의 활성화 방안연구 - (2002. 1) 29면.

22) 금융감독원,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 참조.

연쇄적으로 어음의 소구현상이 생기는 것을 보고 일으킨 착시현상에 불과하다.²³⁾ 왜냐하면 부도가 나면²⁴⁾ 어음소지인은 배서인 누구에게든 소구를 할 수 있고(어음법 제47조 제2항) 그리고 소구의무를 이행한자는 다시 전자에게 소구를 할 수 있으므로(동조 제3항), 부도에 의한 피해는 발행인이 끝내 지급을 거절할 경우에 한해 배서인 중 1명에게만 국한되기 때문이다.²⁵⁾ 이와 같이 어음에 부도를 유도하는 요소가 없는 이상은 어음을 부도와 연관지어 그 폐해를 지적하고, 이를 통해 어음의 폐지와 함께 전자외상매출채권의 활성화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을 결한다.

요컨대 전자외상매출채권은 양도 유통을 금함으로써 지급의 신속성 내지는 확실성²⁶⁾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어음은 유통성확보까지 염두에 둔 것이고, 그리고 이용주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전자외상매출채권은 담보제공능력이 있는 기업이 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²⁷⁾ 반해 어음은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전자외상매출채권과 어음은 법적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다.

23) 이철송, “전자어음시장론”(2003) 2면.

24) 이를 어음법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면 “어음소지인이 만기에 발행인에 대해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발행인이 지급을 거절하면”의 의미이다

25) 다만 다음의 경우, 즉 갑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소유하고 있는 A가 갑으로부터 만기에 지급을 받을 것을 예상하여 B에게 어음을 발행하고, B는 마찬가지로 A로부터 만기에 지급을 받을 것을 믿고 C에게 어음을 발행한 경우라면, 즉 A는 갑으로부터, B는 A로부터 어음금을 받게되는 것을 전제로 각각 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갑이 부도를 내게 되면 A, B도 연쇄적으로 부도를 내고 도산할 가능성은 크다. 그러나 이 때에도 연쇄부도의 원인은 A와 B에게 자금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지 갑이 A에게 어음을 발행했기 때문인 것은 물론 아니다.

26) 전자외상매출채권의 만기는 최장 180이며, 종류는 ①보증전자외상매출채권과 ②무보증외상매출채권이 있는데, ①의 경우에는 구매기업이 전자채권 발행금액을 결제하지 못하는 상황 즉 미결제가 발생하더라도 발행은행이 대신 지급해 주게 되므로 지급의 확실성은 보장되지만 ②의 경우에는 발행은행의 지급보증이 없기 때문에 지급의 확실성이 반드시 보장된다고는 할 수 없다.

27) (주 23)의 ①의 보증전자외상매출채권의 경우에는 지급의 확실성은 보장되나 만일 구매기업이 결제를 하지 못하게 되면 발행은행이 그 책임을 져야하므로 은행으로서는 담보력이 있는 대기업위주로 거래를 하고 상대적으로 신용이 낮은 중소기업과는 거래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

전자외상매출채권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견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i) 하나는 지명채권으로 보는 방법이다. 이에 의하면 외상매출채권(금전채권)은 전자화된 문서(전자문서)에 의해 인식될 뿐이고 이 때의 전자문서는 차용증서와 같이 채권의 증거수단에 불과하게 되며, 법리의 적용에 있어서는 민법의 채권양도에 관한 일반원칙(민법 제449조 이하)이 적용되게 된다. 다만 현행약관에 의하면²⁸⁾ 전자외상매출채권은 기본적으로 양도가 금지되므로 동채권의 양도에 지명채권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에 따르는 유통상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특히 논할 필요가 없을 지 모르나,²⁹⁾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채권의 속성이 지명채권인 것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는 적지 않다.

①전자문서는 단순히 채권의 존재에 관한 증거수단에 불과하므로 유가증권처럼 권리의 존재에 관한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없고, ②원인관계가 전자외상채권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므로(이른바 유인성) 원인관계에 의해 권리의 내용이 바뀔 수 있으며, ③전자문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해서는 문언대로의 효력(이른바 문언성)이 인정되지 않음으로 해서 실질관계에 의해서도 권리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고, ⑤권리가 증권에 표창된 것이 아니라 무형의 형태로 존재하므로 권리의 소재에 관한 확실한 공시방법이 없으며, 그리고 ⑥소송에 있어

28) 전자외상매출채권은 은행권이 1년여의 기간을 거쳐 B2B결제수단으로서 공동으로 개발한 금융상품이며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거친 “전자외상매출채권 거래기본약관”과 그 세칙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29) 현행약관에 의하면 전자외상매출채권은 유통목적의 양도는 금지되나 담보제공목적의 양도는 허용되므로 이 범위에서는 역시 지명채권법리의 적용에 따른 유통상의 문제는 야기될 수 있다. 부연하면 판매기업(양도인·채권자)이 은행(보관은행·제3자)에게 외상매출채권을 담보에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현금화하려면 민법 제450조에 기해 구매기업(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에 따른 통지·승낙(동조 제1항)과 대항력(확정일자)(동조 제2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 지명채권은 양도성을 본질로 하는 채권이 아니므로 거래안전과 유통성확보를 위한 제반 법리(항변의 절단, 선의취득 등)의 적용이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민법 제450조상의 통지·승낙 및 대항력(확정일자)의 요건을 어떻게 구비하는가이다. 현행약관에서는 통지·승낙의 문제에 관해서는 사전승낙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으나 확정일자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미결인 상태로 남아 있다. 그런데 2002년 10월에 입법예고된 “전자금융거래법안”에서는 이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상세는 본문 III. 3. 참조).

서도 채권발생 자체나 양도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점등이 그것이다.³⁰⁾

(ii) 또 하나는 전자외상매출채권의 법적 성질을 유가증권, 즉 기명채권으로 보는 방법이다. 즉 전자문서도 서면증권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이 전자문서에는 외상채권으로서 금전채권이 표창되어 있는 동시에 채권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렇게 전자문서에 표창된 금전채권은 전자문서와 함께 발행·행사되어야 하며, 다만 현행약관상 전자외상채권은 양도가 제한되므로 양도에 한해 그렇지 않는 것으로³¹⁾ 이론을 구성을 하면 적어도 불완전 유가증권으로 보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³²⁾

그러나 이렇게 보더라도 기명채권의 양도는 지명채권양도의 방법(민법 제450조)에 의해야 하므로³³⁾ 예컨대 선의취득, 인적항변의 절단, 선의지급 등과 같이 거래안전과 유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리의 적용은 위의 지명채권설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반해 어음의 경우는 완전유가증권으로서 권리의 발생, 이전, 행사의 전 과정이 증권과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권리의 소재나 범위 등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지시증권으로서 배서를 통해 간편하게 양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서에 권리이전적 효력을 비롯하여 자격수여적 효력 및 담보적 효력이 인정됨으로써 권리취득과 지급에 있어서도 확실성을 기할 수 있으며, 특히 유가증권의 속성 중 이른바 무인성은 원인관계로부터 어음관계를 독립시키고 문언성은 권리의 내용을 확정함으로써 어음의 취득을 용이하게 하

30) 李哲松, 「電子어음法の 制定에 관한 研究」(2001. 7. 31) 24- 29면. 참고로 전자외상매출채권의 장점에 관해서는 손희성, 전제논문, 46면.

31) 배서금지어음은 지명채권의 양도방법과 지명채권양도의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수 있으나(어음법 제11조 제2항), 즉 증권에 의한 양도가 허용되지 않으나 그렇다고 하여 배서금지어음의 유가증권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32) 정경영 「有價證券 電子化에 관한 法律的 考察」(한국법제연구원, 2002. 10) 43- 45면 참조.

33) 물론 전자외상매출채권을 기명채권(기명증권)으로 보게 되면 지명채권과는 달리 권리행사는 전자증권을 통해서만 할 수 있고 양도시에는 지명채권양도의 방식에 따르나 전자증권의 교부가 요구된다. 다만 현행약관에 의하면 전자외상매출채권의 양도의 경우에는 금융결제원의 등록을 요하므로 전자증권의 교부는 금융결제원에 등록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정경영, 전제서 47면).

고, 상환증권성은 이중지급의 위험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며, 이른바 인적항변의 절단, 선의취득제도 등은 어음거래의 안전성과 유동성을 극대화한다. 소송에 있어서도 유리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제2조 제1항 1호)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것은 위에서 언급한 전자외상매출채권의 단점과 어음의 장점은 이용주체의 사정에 따라서는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즉 납품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전자외상매출채권은 현금결제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제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구매기업의 입장에서조차 자력이 풍부한 경우라면 굳이 어음을 발행하기보다는 현재 세제상의 혜택³⁴⁾까지 주어지는 동채권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업신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어음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자외상매출채권과 어음은 역시 상호보완관계이지 배타적인 관계는 아니라고 본다.

Ⅲ. 전자어음제도의 도입과 전자어음법의 제정 필요성

전자어음법안의 제안이유에서도 분명히 하고 있듯이, 전자어음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관해서는 어음거래의 투명성제고,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어음결제의 신속화, 비용절감 등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하며, 또한 전자어음의 도입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효과 역시 기업회계·세무의 투명화와 그로 인한 세수증대,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 등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지면관계로 현재 우리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중심으로 전자어음의 도입필요성에 관해 간단히 설명하기로 한다.

그리고 전자어음법에 대해서는 현행의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을 중심으로 현행법 하에서도 전자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방법으로 동법의 제정의 필요성에 관해 언급하기로 한다.

1. 전자어음제도의 도입필요성

34) 보증전자외상매출채권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에 의해 법인세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손희성, “전계논문” 47면 참조).

(1) B2B의 활성화와 비용절감

(가) B2B의 활성화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업간전자상거래(B2B)시장규모는 1999년 약 4조 7천억에 전자상거래율은 0.936%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에는 약 8조원의 시장규모에 전자상거래율은 1.576%로 배에 가까운 성장을 하고 있다.

B2B시장규모는 이처럼 급증하고 있으나 결제수단은 어음수표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1999년말 기준으로 기업결제의 84.1%(금액기준), 2000년말 기준으로는 기업결제의 74.4%(금액기준)가 어음·수표교환방식에 의해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³⁵⁾

이러한 현상은 B2B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B2C에 비해 거래금액이 거액이므로 비대면결제의 편리성보다는 대면결제의 안전성과 확실성이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는데다가, 세원노출을 꺼려하고 거래선과의 관계유지 및 협력을 위한 비공개구매를 선호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기업문화적 요인까지 작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하여튼 B2B거래에 걸맞는 결제수단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한 결과 우리나라의 B2B거래는 “물품거래 on-line 대금결제 off-line”의 이른바 “반쪽 e-Marketplace”³⁶⁾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결제과정에서의 병목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는 데에는 현재 기업결제에서 어음수표가 차지하는 비율을 생각하면 어음(수표)의 전자화, 즉 전자(수표)어음의 도입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나) 비용절감

35) 한국거래진흥원, “전계(주 21)서” 5 - 6면.

36) e-Marketplace란 B2B거래에 있어서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을 연결시켜 거래를 성사시켜주는 인터넷상의 시장이다. B2C거래에서의 쇼핑물과 성격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행의 어음수표교환실적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어음교환소를 통해 교환되는 약속어음만 2001년말 기준으로 약 808만 4천매 2002년에는 약 753만 1천매에 이르고 있다. 어음제작비용만 해도 상당할 터이고 배서에 의한 양도가 5회만 이루어져도 거의 3750만건에 가까운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어음제작·유통비용만 연간 약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어음의 관리비용, 어음의 수수를 위한 기업·은행등의 인건비 및 교통비, 어음교환비용까지 합치면 연간 대략 36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즉 전자어음이 도입되면 연간 약 3600억원이 절감된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는 어음분쟁에 따른 쟁송비용이나 어음의 분실과 그로 인한 제권판결 등 어음과 관련된 사회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2) 어음결제율의 저하에 따른 과비용구조의 개선

주요선진국 중 비교적 어음의 이용이 활발한 일본을 보더라도, 어음결제율은 점점 저하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위의 (1)참조). 그 이유는 경제성장과 함께 기업자금이 풍부해지고 한편으로는 현금성결제제도나 은행지로, CMS(Cash Management Service)³⁷⁾로 대표되는 은행공동망 등 새로운 결제시스템이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서 그 이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어음결제율의 저하는 일시적인 추세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렇게 되면 문제는 현행의 입회방식의 어음교환제도를 유지하기가 곤란하게 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어음결제율이 점점 저하하는 상황에서 현행의 어음교환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게 되면 어음 1매당 처리비용이 너무 커지기 때문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의 어음제도의 전자화의 핵심은 전국에 걸쳐 540여개나 되는 어음교환소를 하나의 전자어음교환소로 통합한다는 것인데³⁸⁾, 그것은

37) CMS(자금관리서비스)란 여러 은행과 거래하는 기업이 중계센터인 금융결제원 또는 특정 은행에 접속하는 것만으로 모든 거래은행을 상대로 한 대량자금이체 및 수납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 서비스망의 2000년도 이용실적은 98만건 1100억원으로 전년대비 건수와 금액이 각각 69.5%와 124.5%씩 증가하였다.

38) 본문 I. 2. (3) 및 後藤紀一, “電子手形交換所の開設と支拂呈示の效力” 「金融法務事情」 제1649호(2002) 6면.

바로 ‘어음결제율저하에 따른 과비용문제’때문이다.³⁹⁾ 51개나 되는 어음거래소를 두고 있으며 또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개발에 적극적인 관계로 어음결제율의 저하속도는 오히려 일본을 능가할 것으로 보이는 우리나라로서는 주목하여야 할 대목이다.

요컨대, 어음결제율이 저하할수록 어음제도의 전자화의 필요성은 오히려 증가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⁴⁰⁾

(3) 결제수단의 다양화

현금성결제제도의 하나인 전자외상매출채권은 전자어음의 기능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동채권과 어음은 그 역할과 기능면에서 상이하고 서로 보완적인 관계이므로 각각 존재의 정당성을 가지며, 따라서 전자외상매출채권의 존재를 이유로 전자어음의 필요성이 부정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사건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대로이다(전술의 II.2. (2)참조).

이는 바꾸어 말하면 B2C거래의 결제를 위해 다양한 결제수단, 예컨대 전자화폐, 전자자금이체, 직불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신용카드 등(전자금융거래법안 제2조 제5호 참조)이 소비자의 니즈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듯이⁴¹⁾, B2B거래에 있어서도 소비자의 수요가 있는 한 결제수단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전자어음제도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전자금융거래법안 제21조에서는 전자채권(전자외상매출채권과 동일한 개념임)⁴²⁾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전자채권의 양도에 있어서 지명채권양도에 관한 민법 제450조의 대항요건을

39) 全國銀行協會, “전계(주 12)基本方針” 3면.

40) 물론 이 이야기는 어음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음결제율이 저하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는 어음결제율은 거의 40%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음의 전자화를 서두르는 이유는 “어음결제율(교환매수)은 일관해서 감소하고 있지만 어음은 기업의 중요한 결제수단으로서 장기에 걸쳐 존속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全國銀行協會, “전계(주 12)基本方針” 3면)이라는 것이다.

41) 전자지급결제제도에 관한 상세는 崔承烈, 「전자지급결제에 관한 법적 연구」(한국법제연구원, 2002)

42) 동법안 제2조 제16호 참조.

갖추는 방법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즉 (i) 동법안 제21조 제1항에서는 민법 제450조 제1항의 대항요건은 채권 양도에 관한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이 통지·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가 전자채권관리기관에 등록될 때에 갖추어진 것으로 보고, 그리고 (ii) 제2항에서는 민법 제450조 제2항의 확정일자는 통지·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0조에 의한 시점확인이 있는 경우에 갖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전자외상매출채권의 양도에 있어서 대항요건과 관련하여 그간 미결과제로 남아 있던 법리적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했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⁴³⁾ 전자외상매출채권이 어음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법률적으로 명백히 했다는 측면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동조에서는 전자외상매출채권의 양도는 기본적으로 지명채권양도의 방법(민법 제450조)에 기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양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로 전자외상매출채권은 지명채권이나 기명채권(기명증권) 중의 하나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해, 어음은 주지하다시피 지시채권(지시증권)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어음이 전자외상매출채권과 다름이 명백한 이상은 어음에 대해 B2B의 결제수단으로서 전자외상매출채권과는 다른 역할과 기능이 기대되는 것은 지극한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요컨대 전자어음은 B2C에 비해 상대적으로 결제수단이 미흡한 B2B거래에 다양한 결제수단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도입의 필요성은 존재한다고 본다.

2 전자어음법의 제정필요성

현행법상 어음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행하는 것, 즉 전자어음의 발행이 새로운 입법 없이도 가능한가?

어음은 엄격한 요식증권이며 어음행위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요건으로 하는 서면행위이므로(통설) 먼저 서면에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리고 이 서면에 발행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하 서명)이 있어야 한다(어음

43) 전계(주 30) 및 전자금융연구소 조사연구팀, 「전자지금이채관련 주요 법률문제와 국내외 입법동향」(2001. 10) 91면 참조.

법 제1조, 제75조). 따라서 현행법상 전자어음의 발행이 가능한지는 결국 (i) 전자화된 서면, 즉 전자문서가 어음법상의 서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전자문서의 서면성인정여부)와 (ii)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 즉 “전자서명”의 가능여부에 달려 있다.

이 중 (ii)의 “전자서명의 가능여부”와 관련해서는 현행 전자서명법에 의하면,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동법 제2조 3호)이 있으면 그것은 어음법에서 요구하는 서명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동법 제3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을 부착할 경우 어음법상의 서명요건은 충족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i)의 “전자문서의 서면성인정여부”이다. 현행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하면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동법 제4조). 즉 전자문서는 원칙적으로 문서로서 효력이 인정되나,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문서로서의 효력은 부정된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의 적용은 동법상의 전자거래에만 국한되므로(동법 제3조), 전자거래의 개념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동법에 의하면 “전자거래는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해 처리되는 거래”(제2조 5호)를 말한다.

이상을 정리하면 현행전자거래법상 “서면성이 인정되는 전자문서”란 재화나 용역의 거래(이하 물품거래)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에 사용된 전자문서를 말하며,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전자어음의 경우 “전자문서의 서면성여부”는 ①전자어음이 물품거래와 관련성을 갖는지와 ②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에 의해 판단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판단한 결과, 전자어음이 물품거래와 관련하여 이용된 것이고 그리고 다른 법률(즉 어음법)에 서면문서에 관련된 특별규정이 없으면 전자어음의 서면성은 인정되게 되는 것이다.

먼저 ①전자어음의 “물품거래와의 관련성”에 관해서는 학설은 크게 두가지의 입장이 있는데, 하나는 관련성을 좁게 해석하여 물품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의 이전과 같은 거래 그 자체와 이에 부수하는 거래로 한정해서 관련성을 인정하는 견해이고⁴⁴⁾, 또 하나는 물품거래와 관련한 일체의 의사표시를 포함하

44) 정완용,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제도와 전자식 유가증권제도에 관한 연구”

는 것으로 관련성을 넓게 해석하는 입장이다.⁴⁵⁾ 후설은 기본적으로 관련성을 넓게 해석함으로써 전자문서의 사용기회를 확대하자는 것이지만, 현행법문상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②의 전자거래법 제4조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해당법률의 입법취지상 특별히 문서가 요구되는 규정”⁴⁶⁾ 혹은 “문서에 관한 규정”⁴⁷⁾이 있는 경우로 보는 입장과 ㉡“전자문서의 사용을 배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로 해석하는 입장⁴⁸⁾으로 대별되는데, ㉡의 입장을 취하면 이 역시 전자문서의 사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은 있을지 모르나, 기존의 실정법은 전자문서를 예상하고 제정한 입법이 아니므로 전자문서의 사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리가 없고, 따라서 기존의 실정법상의 문서관련규정⁴⁹⁾은 전부 전자문서로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동조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무의미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전자문서의 서면성은 다른 법률에 “전자문서를 배제하는 명문규정”

(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1년도 법률제도 WG보고서, 2001. 12. 12) 62면.

45) 정경영, “어음의 전자화에 따른 법적 문제점 고찰”(제34회 비교사법학회(2002. 12)발표논문) 15면.

46) 최준선, “전계논문” 66쪽.

47) 정완용, “전계보고서” 63면.

48) 정경영, “전계학회발표논문” 15면.

49) 예컨대 어음수표,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등과 같은 유가증권에 관한 법규(예컨대 어음수표법이나 상거래법)나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위임장 등에 관한 상법규정, 소비자보호법, 증권거래법 등에서 특별히 서면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의 전달만이 목적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보호라는 측면까지 고려한 것이 대부분인데(최준선, “전계논문” 66면), 이 점을 고려하면 해석론을 통해 확일적으로 전자서면에 서면성을 인정함으로써 서면을 전자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다. 참고로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나 IPO시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설명서 등의 공시서류에 관해 전자서면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서면을 선호하거나 전자서면에 익숙하지 않는 투자자를 위해 반드시 서면문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도(이른바 paper back-up시스템, 권종호, “사이버증권거래와 발행시장” 「증권법연구」 제1권 제1호(2000) 131면, “주주총회의 IT화” 「증권예탁」 제41호(2002) 14면 이하 참조) 주주나 투자자보호라는 측면에서 서면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은 물론이고 “해석상 서면이 요구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면 또는 유가증권법정주의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현행법상 적어도 어음의 경우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발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⁵⁰⁾

그런데 최근에 들어 이러한 논의 자체가 실익이 없게 되었는데, 바로 2002년 10월에 입법예고된 “전자금융거래법안” 때문이다. 동법안 제4조 제2호에서는 “어음·수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은 이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전자문서에 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전자어음은 새로운 입법 없이는 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자어음은 전자금융거래법안이 수정 없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⁵¹⁾ 그 때는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현행법의 해석상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지 아니하고서는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001년 11월에 발의된 전자어음법안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나 B2B거래의 결제수단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전자어음의 도입이 시급한 현안임을 고려하면 시의 적절한 입법제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V. 전자어음법의 법리적 과제

1. 서언

전술한 바와 같이 전자어음법안은 2001년 11월 여야의원 145명에 의해 발의되어 현재 심의중에 있다.

동법안의 제안이유에 의하면 전자어음법은 현행어음법이 실물어음을 전제하여 만들어진 관계로 전자결제환경에 적합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어음이 일반상거래와 전자상거래에서 디지털 환경에 접합한 전자결제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 조세투명성제고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며 전

50) 同旨, 정완용, 전계보고서, 63면.

51) 물론 현행유가증권 및 채권법체계 하에서는 전자문서에 의해 어음·수표와 같은 지시채권 또는 무기명채권은 만들 수 없다는 입장에 의하면(이철송, “전계보고서” 20면) 동법안의 통과여부에 관계없이 전자어음의 도입에는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자화를 통한 물류비용의 절감을 꾀하고 디지털환경에 따른 기업간 결제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

과연 동법안이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살펴보기에 앞서 동법안의 주요골자(특징)와 기존어음법과의 관계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

(1) 전자어음법안의 주요골자 및 특징

총19개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법안에서는 총 10항목에 걸쳐 “주요골자”에 대해 언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기초로 동법안의 특징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법은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전자거래법과 전자서명법상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며, 예컨대 전자문서, 전자서명, 인증서의 용어가 그것이고(동법안 제2조 1호, 3호, 5호) 그리고 동법의 적용은 약속어음에 국한되고 있다(동법안 제1조).

둘째, 전자어음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자어음의 발행에서부터 지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중앙관리기구가 통제하는 이른바 “전자등록방식”⁵²⁾을 취하고 있으며(동법안 제4조, 제5조) 전자어음의 절대적 기재사항에는 전자어음 관련당사자를 식별할 수 있는 “사업자고유번호”가 포함된다(동법안 제6조, 제2조 6호).

셋째, 지면형태의 실물어음의 경우 현행 어음법에 의해 “어음의 분할”이 금지되나(어음법 제12조 제2항) 전자어음의 경우에는 어음분할이 인정되며 분할된 어음은 각각 배서양도할 수 있다(동법안 제8조).

넷째, 지급제시와 관련하여 만기일에 중앙관리기구의 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자동으로 지급제시가 이루어지며(동법안 제11조 제1항), 백지식 배서에 의해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현행 어음법에 의하면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나(어음법 제16조 제1항), 전자어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지급청구시 자기명의로 백지를 보충하여야 한다(동법안 제11조 제2항).

그리고 다섯째, 중앙관리기구는 어음거래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52) 이에 관한 상세는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전계연구보고서”148면 참조.

승인을 얻어 전자어음에 관한 결제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동법안 제17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법안의 특징으로는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 있지만, 기존의 어음법과의 관계에서 국한하여 두 가지만 지적한다면 (i) 하나는 투명성제고라는 측면에서 어음거래에 관한 정보공시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고, (ii)또 하나는 실물어음에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던, 어음분할제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는 기존의 어음제도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인 만큼 논란의 여지도 많다. 이점에 관해서는 후술한다.

(2) 현행 어음법과의 관계

전자어음에 관한 법률을 입법함에 있어서 입법정책상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전자어음에 관해 유가증권으로서 어떠한 법적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이다. 유가증권이라 하더라도 법적 효력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어음수표는 완전유가증권으로서 완벽한 문언성과 무인성을 자랑하지만 주권이 나 화물상환증의 경우는 불완전유가증권으로서 문언성은 희박하며 유인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이 전자어음에 대해 어떤 법적 효과를 부여할 것인가는 지극히 중요한 입법정책상의 문제인데, 동법안에서는 전자어음에 관해 유가증권으로서 기존어음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결과 동법안이 그리고 있는 전자어음의 모습은 외관이 전자문서의 형태를 띄고 있을 뿐 기존의 어음과 다르지 않다.

동법안 제3조에서 “전자어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⁵³⁾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전자어음이라 하여 기존어음과 법리적으로 다른 것은 아님을 전제로 한 것이고, 따라서 전자어음에 대해서도 현행어음법은 당연히 적용되며 다만 서면형태의 어음을 전제로 하여 입법된 현행어음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동법이

53) 이 규정은 한편으로는 기존의 지면형태의 어음도 전자어음과 병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규정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 규정은 현행 어음법의 존재를 전제하는 것인데 현행 어음법은 지면형태의 실물어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용됨을 명백히 한 것이다. 즉 어음법과 전자어음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동법안이 전자어음에 관해 유가증권으로서 어음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기본적으로 어음법의 적용을 전제로 하면서도 별도의 법률로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미 기존 연구에서 이 방식이 가장 우수한 입법방법으로 지적되어 왔던 바이기도 하지만⁵⁴⁾ 전자어음은 발행에서부터 지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되는 바 실제 운영에 있어서 기존의 어음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또한 입법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전자어음에만 적용되는 규정만을 모아 따로 입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입법방향으로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2. 전자어음법안의 주요 쟁점

현재 심의중인 전자어음법안은 이른바 “어음의 무권화”를 지향하는 것인 만큼 어음의 발행에서부터 지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전자적인 방법에 의해 처리되는 것을 전제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면형태의 실물어음을 전제로 한 현행 어음법과는 규제방법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행 어음법상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는 “지급지”(어음법 제1조 5호, 제75조 제4호)를 일례로 들면, 현행어음법의 경우 실물어음을 전제로 어음채무를 추심채무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은 지급지는 절대적 기재사항일 수밖에 없지만, 전자어음의 경우는 중앙관리기구나 지급담당금융기관에 대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지급제시가 이루어지므로(동법안 제11조 제1항) 지급지의 의미는 약할 수밖에 없다.⁵⁵⁾

이처럼 전자어음에 대한 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한 두가지가 아니지만, 전술한 대로 ①거래정보공시강화에 관한 규정과 ②어음분할

54) 이철송, “전계보고서” 52면·55면, 정완용, “전계보고서”65면.

55) 물론 동법안에서는 지급담당금융기관의 소재지를 지급지로 간주하는 형태로 지급지를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하고 있는데(제6조 제2항), 이는 민사소송법 제7조에 의하면 어음소송에 있어서 지급지는 특별재판적의 연결점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이철송, “전계보고서” 57면).

제도,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③전자어음의 발행을 약속어음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에 국한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1) 전자어음의 발행·유통 등의 거래와 관련한 정보공시강화

동법안 제6조는 전자어음의 발행과 관련하여 전자어음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절대적 기재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자고유정보도 절대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하고 있다(동조 제1항 5호). 이 사업자고유정보란 정의규정인 제2조에 의하면 “전자어음과 관련된 당사자의 상호나 사업자등록번호, 회원번호,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 사업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동조 제6호).

이와 같이 사업자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인 사업자고유번호를 전자어음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 것은 어음행위자의 신원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통어음의 발행을 막는 한편⁵⁶⁾ 조세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⁵⁷⁾

이 규정은 분명, 어음거래의 실명화와 이를 통한 거래의 투명성제고, 음성적인 거래차단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한편으로는 동법안 제17조 제3항의 전자어음거래내역에 관한 정보공개규정⁵⁸⁾과 맞물림으로써 거래정보의 노출을 꺼리는 기업의 일반적인 성향에 의해 전자어음의 이용을

56) 전자어음의 도입이 유통어음의 발행을 저지하게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현행 어음제도에 의하면 어음할인은 상업어음(진성어음)의 경우에 한해 가능하고, 이른바 자가어음(할인받으려는 어음의 소지인이 동시 동어음의 발행인인 어음)이나 유통어음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할인을 받을 수 없다. 그리하여 기승어음(예컨대 두사람이 공모하여 실질은 유통어음이면서 외형은 상업어음으로 가장하여 서로가 상대방을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어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할인을 받는 예가 종종 있으나, 전자어음의 경우에는 어음발행과 관련된 정보가 전부 노출되기 때문에(동법안 제4조 제3항 참조) 이러한 기승어음의 형태로 유통어음을 발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57) 전자어음의 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안(의안번호 1254)·주요골자 라.

58) 동조항을 원문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중앙관리기구는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전자어음의 발행상황, 잔액 등의 결제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를 염두에 두고 동법안 제18조는 전자어음에 대해 조세감면이라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 정도만으로 전자어음의 적극적인 이용을 개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전자어음발행·유통과 관련한 기업거래정보는 적어도 “신용정보의 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 신용정보에 준하여 엄격히 보호하여야 할 것이고(동법 제23조 및 제24조 참조) 나아가서는 전자어음을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해서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할인판매할 수 있는 시장(가칭 “전자어음시장”)을 개설하는 등 전자어음의 이용에 강한 유인이 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도 아울러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어음분할제도

동법안 제8조에 의하면 전자어음은 어음금을 2 이상으로 분할하여 그 일부에 관해 배서양도할 수 있는데(동조 제1항), 이를 어음분할제도라 한다. 이 어음분할제도는 전자어음의 경우에는 일부배서를 허용한다는 것인데, 현행어음법 제12조 제2항에서는 이를 명문으로 금하고 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하게 되면 권리와 증권의 결합이 해체되어 유가증권의 본질에 반하게 되고 또 이를 전부배서로서 유효하다고 하면 배서인의 의사에 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⁵⁹⁾

그러나 전자어음의 경우에는 이러한 논리로는 어음분할을 막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전자어음의 경우에는 우선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는 성립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분할이 되더라도 분할된 부분의 어음상의 권리는 전자문서라는 무형의 증권에 표창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분할에 대해 어음행위자의 승낙이나 사전동의가 있으면 의사에 반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59) 鄭燦亨, 「商法講義(下)」(2001) 259면. 물론 현행 어음법 하에서도 표지어음제도를 이용하면 어음분할(일부배서)의 효과를 얻을 수는 있으나 그 외형은 어디까지나 새로운 어음의 발행이다. 참고로 표지어음이란 각 금융기관이 할인·보유하고 있는 상업어음이나 무역어음을 원어음으로 하여 이를 분할 또는 통합하여 새로이 할인식으로 발행한 약속어음을 말한다.

그렇다면 어음분할을 인정할 경우 실익이 있느냐가 문제인데, 이에 대해 동법안은 결제에 혁신적인 편리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⁶⁰⁾

어음분할의 수요는 주로 중소기업(B)이 여러 개의 하청기업(C)으로부터 납품을 받아 제조한 제품을 대기업(A)에 공급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하는데, 이 경우는 대체로 중소기업(B)은 대기업(A)으로부터는 거액의 대금을 받게 되지만 자신은 여러 하청기업(C)을 대상으로 소액씩 나누어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 때 중소기업(A)이 대기업으로부터 어음을 받게 되면 이 어음을 금융기관에 할인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하여 하청기업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이루어지는 어음할인이 적지 않았다. 예컨대 중소기업(B)이 대금 500만원을 하청기업(C)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대기업(A)으로부터 받은 3000만원짜리 어음을 비싼 할인율을 물어가면서 할인하는 경우가 그것인데, 이 때 어음분할제도가 인정되면 중소기업(B)은 대기업(A)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원어음으로 하여 하청기업(C)에게 분할배서해서 양도하면 불필요한 어음할인은 막을 수가 있다. 어음분할은 바로 이러한 불필요한 어음할인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 최대의 장점이 있다.

그런데 어음분할을 인정할 경우 문제는 어음발행인(위의 예의 경우 A)의 입장에서 보면 어음의 관리사무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어음항변이 절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⁶¹⁾ 따라서 어음분할제도가 아무리 중소기업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 하더라도 거래의 상대방의 이익까지 침해하면서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어음분할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음분할을 금하는 조치는 반드시 강구되어야 한다(동법안 제8조 제5항).

이러한 조치가 취해진다면 어음분할제도를 인정하여도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현행법에서 어음분할(즉 일부배서)를 금지하고

60) 동법안·주요골자 바.

61) 이철송, “전계보고서” 64면. 왜냐하면 어음금액이 클수록 어음수취인은 주의해서 어음을 취득하게 마련이므로 항변이 붙은 거액의 어음을 발행인에게 확인도 없이 취득하게 되면 대개가 중과실이 성립하게 되고 따라서 발행인은 어음법 제17조에 기해 어음소지인에 대해 인적항변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이에 반해 어음금이 소액인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확인절차 없이 취득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므로 이 경우에는 확인절차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 중과실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고 따라서 발행인은 어음법 제17조에 기해 인적항변이 절단되어 어음상의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있는 이유는 전술한 바와 같이 허용할 경우 어음관계자의 이익이 부당히 침해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유가증권의 개념에 사로잡힌 법해석론이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더 더욱 그러하다.⁶²⁾

(3) 약속어음에 국한된 전자화: 전자수표의 도입

동법안은 전자어음을 약속어음에 국한하고 환어음이나 수표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동법안 제1조). 따라서 약속어음에 한해 중앙관리기구에 등록함으로써 전자문서로 발행할 수 있는데(동법안 제5조 제3항), 이처럼 전자어음화의 대상을 약속어음으로 국한 한 이유는 ①전자화에 대한 업계의 요구가 약속어음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과 함께 ②수표의 경우, 특히 자기앞수표는 2000. 10월부터 전자화됨으로써 실물수표의 이동없이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③환어음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예가 드물다는 점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이는 중대한 입법상의 불비라고 생각된다.

환어음의 경우에는 국제거래에 수출입대금 결제를 위해 주로 화환어음의 형태로 이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국제적인 표준과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입법기술상 고려하여야 할 요소가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⁶³⁾ 적어도 수표의 경우에는 당좌수표는 물론이고 현재 부분적으로 전자화되어 있는 자기앞수표도 완전 무권화를 위해 전자수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기업간 결제에 있어서 수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음에 못지 않을 정도로 클 뿐만 아니라⁶⁴⁾ 특히 입법기술적으로도 수표의 경우에는 지급위탁증권으로서 현금에 대신하여 사용되므로 지급약속증권으로서 유통을 전제로 하는 약속어음에 비해 배서나 소구제도 등에 있어서 특별히 복잡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62) 다만 일부에서는 분할제도가 인정되게 되면 어음의 연쇄부도의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어음의 연쇄부도는 어음제도와는 무관한 것이라는 점을 이미 언급하였기 때문에(본문 II. 2. (2) 참조) 여기서는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는다.

63) 정완용, “전계보고서” 67면.

64) 2000년말 기준으로 기업결제의 74.4%(금액기준)가 어음수표교환방식을 통해 결제하고 있는데(본문 III. 1. (1). (가)참조), 이 74.4% 중 약속어음은 47.25%, 당좌수표는 21.3% 그리고 자기앞수표는 25.59%이다.

V. 결론

2001년 11월 전자어음법안이 의원입법으로서 국회에서 발의된 것을 계기로 전자어음이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한 가운데, 본고에서는 전자어음제도의 도입필요성과 도입시 고려하여야 할 법리적 문제점에 관하여 IMF 경제위기 이후 어음을 대체할 결제수단으로서 개발된 전자외상매출채권과 그리고 전자어음법안을 소재로 하여 각각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른바 어음제도폐지론이 그 근거로 삼았던 어음제도의 폐해, 즉 어음부도에 의한 연쇄도산은 어음부도시 연쇄적인 이루어지는 소구현상을 보고 일으킨 착시현상에 불과하며, 따라서 어음제도의 폐해를 이유로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개발된 전자외상매출채권으로 어음제도의 기능을 대체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을 결하며, 오히려 양자는 결제수단으로서 역할과 기능면에서 어음은 지급약속증권으로서 신용공여기능을, 전자외상매출채권은 현금성결제제도로서 현금결제효과를 갖는다는 점에서 배타적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어음은 전자외상매출채권 등과 같은 다른 결제수단과 함께 기업결제수단으로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존의 지면형태의 실물어음을 전자화하여 무권화함으로써, 즉 전자어음제도를 도입하여 어음의 결제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은 이러한 기대에 부합하는 것으로 높이 평가하여도 좋을 것이다.

다만 현재 국회에서 심사중인 전자어음법안은 지금까지 어음의 무권화를 위한 입법례가 전세계적으로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선도적인 의미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바로 그 점 때문에 보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예컨대, 중앙관리기구나 결제시스템에 관여하는 금융기관의 책임문제, 독일의 입법례에서 보듯이 전자어음을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는 문제, 그리고 전자화의 대상을 수표까지 확대하는 문제 등이 그것이라고 생각한다.